

금호 박찬구 회장 불구속 기소

남부지검, 금호P&B화학 자금 횡령·배임 혐의로 ... 주식 불법거래도

서울남부지검 형사6부(부장검사 전형근)는 12월18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, 회사자금 횡령·배임 등의 혐의(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·횡령 및 위반)로 박찬구(63)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.



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12월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.

검찰에 따르면, 박찬구 회장은 2009년 6월 미공개 내부정보를 통해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6월15일부터 29일까지 자신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262만주(보유주식의 88%)를 집중 매도해 102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. 나머지 35만주(12%)는 담보해지 절차가 지연돼 7월3일 매각했다.

또 1999년부터 2009년까지 비상장 계열사인 금호P&B화학을 포함해 협력기업과 거래하면서 장부를 조작해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하는 등 회사에 274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.

조사결과 박찬구 회장은 금호P&B화학의 법인자금 107억5000만원을 무담보 저리로 빌려 쓰고, 납품기업에 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식으로 112억6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.

또 자신의 회사에서 나오는 고무 부산물을 다른 곳에 염가 매각해 21억8000만원을 부당지원하고, 납품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뒤 할인한 만큼을 되돌려 받아 32억원을 주식 매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.

검찰은 4월 금호석유화학 본사와 거래처를 압수수색하는 등 박찬구 회장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으며, 박찬구 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회장을 사기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.<저작권자 연

대신 친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기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.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1/12/19>